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671
----------	-----

2023년 4월 19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29일, 서울시장
-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 다. 상정일자 :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 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

### 가. 제안이유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때 자문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과율 조정이 빈번하지 않으므로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문이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상설인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개정  
(안 제3조)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4조)
- 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자동해산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 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조)
- 공개 문서 정비 및 공개방법 등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  
(안 제9조)
-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 삭제(안 제10조)

###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 개요

- 본 개정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제19조<sup>1)</sup>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할 경우 이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현행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 가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이 빈번하지 않고, 2020.5월 이후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한편,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 운용상의 현실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물순환안전국장 소속으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둔다</u> .	제3조(위원회의 설치) ----- ----- ----- <u>둘 수 있다.</u>
제4조(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2.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② - ⑪ (생 략)

현 행	개 정 안
<u>3.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u>	<u>&lt;삭 제&gt;</u>
<u>4.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u>&lt;삭 제&gt;</u>
<u>5. 한강수계관리기금 평가에 관한 사항</u>	<u>&lt;삭 제&gt;</u>
<u>6.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lt;삭 제&gt;</u>
② (생 랙) 제5조(구성) ① - ② (생 랙)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랙) 1. 안전·환경·수자원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u>의장</u> 의 추천을 받은 의원 2. ~ 6. (생 랙)	③ (현행과 같음) 1. ----- ----- <u>시의회</u> 의 추천을 받은 의원 2.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자동해산한다.</u>
<u>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 과장이 된다.</u> <u>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 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u>	<u>⑤ ----- ----- 맡는다.</u> <u>&lt;삭 제&gt;</u>  <u>제8조(위원회의 운영) &lt;삭 제&gt;</u>
② (생 랙) ③ (생 랙) ④ (생 랙)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공개) ① (생 랙) 1. <u>한강수계관리기금</u> 의 결산보고서 2. <u>한강수계관리기금</u> 의 운용계획 3. (생 랙)	제9조(공개) ① (현행과 같음) 1. <u>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관리기금</u> ----- 2. <u>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관리기금</u> ----- 3. (현행과 같음)
<u>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를 요구한 사항</u>	<u>&lt;삭 제&gt;</u>
②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u>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② ----- <u>시장이 따로 -----</u>
<u>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u>	<u>&lt;삭 제&gt;</u>

현 행	개 정 안
<u>을 위촉 해지 할 수 있다.</u>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지를 원하는 경우	

## ■ 물이용부담금 및 위원회 현황

- 물이용부담금은 팔당호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강수계법」 제19조에 의거 1999년부터 수도요금고지서에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3년간 서울시는 총 5,017억원을 납부하였다.

[표 2] 최근 3년간 시·도별 물이용부담금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서 울	인 천	경 기	수자원공사 등
계	14,210	5,017(35.3%)	1,691(11.9%)	6,897(48.5%)	605(4.3%)
2022	4,736	1,617(34.1%)	568(12.0%)	2,354(49.7%)	197(4.2%)
2021	4,763	1,663(34.9%)	572(12.0%)	2,318(48.7%)	210(4.4%)
2020	4,711	1,737(36.9%)	551(11.7%)	2,225(47.2%)	198(4.2%)

- 물이용부담금 징수 단가는 1999년에 톤당 80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증가하였던 것이 2011년부터 톤당 170원으로 동결 중임.

[표 3] 물이용부담금 징수 단가(1999~2021년)

(단위 : 원/톤)

구 분	‘99~‘00	‘01~‘02	‘03~‘04	‘05	‘06	‘07	‘08~‘09	‘11~
단가	8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한강수계법」 제24

조2)에 따른 환경부 산하 한강수계관리위원회([붙임 1] 참조)에서 협의·조정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한강수계법」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등과 관련하여 의제로 상정할 예정에 있는 경우 그 의제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사전자문을 받아 당연직 위원인 행정2부시장으로 하여금 자문받아 정리된 의견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개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3.9월 1기를 시작으로 2022.1월 5기(2022.1.1. ~ 2023.12.31.(2년))가 구성3)되어 있는 상황([붙임 2] 참조)임.

## ■ 개정안 검토의견

### 1) 위원회 비상설화 및 기능 축소(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제4항)

- 먼저, 안 제3조는 위원회 설치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4항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고자 할 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위원회를 구성하였다가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2) 「한강수계법」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1. (생략)

2.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④ - ⑧ (생략)

3) ○ 구성 : 총 13명

- 당연직(1명) : 물순환안전국장(위원장)

- 위촉직(12명) : 시의원(2명), 전문가(8명), 시민단체(2명)

해산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려는 것임.

- 이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조정이 빈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0.6월 17차 서면회의 이후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상설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과 관련된 안건이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겠다는 취지임.
- 그동안 위원회 운영 실적([붙임 2] 참조)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물이용부담금부과율 조정(안),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주요안건으로 총 17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 중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각 1회에 불과한바, 본 개정안의 위원회 비상설화 취지는 공감할만하다 하겠음.
- 그러나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회 이상의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던 점으로 미루어볼 때 서울시가 위원회 운영을 다소 소극적으로 운영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다.
- 다음으로, 안 제4조는 현행 위원회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한강수계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sup>4)</sup>과 관련한 자문사항을 삭제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만을 자문토록 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있음.

---

4) 「한강수계법」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이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으로 한정하려는 것은 현행 조례의 최초 제정(서울특별시조례 제5504호, 2013.5.16., 제정) 사유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변경할 때 전문가 및 시민대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의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일부 공감할만하다 하겠음.
- 그러나 위원회 운영실적([붙임 2] 참조)에서 알 수 있듯이 2013년~2019년까지는 매년 1회 이상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지는 등 2019년까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한강수계 상·하류 협력사업 기금 지원 등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자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관련된 사항이 매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사료됨.

[표 4] 수정의견(안) 조문대비표(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안)
제4조(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한다.  〈삭 제〉	제4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2.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삭 제〉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안)
4.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한강수계관리기금 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6.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서울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다음으로, 안 제5조제4항은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위한 조치로 조례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자동해산도록 신설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이 궁극적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 유무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하겠음.
-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 안 제5조제4항의 위원회 구성 요건 중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안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한 경우는 위원회 해산 시기가 특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바,
  - 본문 내용 중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5] 수정의견(안) 조문대비표(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안)
<p>제5조(구성) ① - ② (생 랙) ③ (생 랙)</p> <p>1. 안전 · 환경 · 수자원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u>의장</u>의 추천을 받은 의원</p> <p>2. ~ 6. (생 랙)</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u>한강수계관리위원회</u>에서 심의 · 의결된 후 자동해산한다.</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과장이 된다.</p>	<p>제5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1. ----- ----- ----- <u>시의회</u>의 추천을 받은 의원</p> <p>2. ~ 6. (현행과 같음)</p> <p><u>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후 자동해산한다.</u></p> <p>⑤ ----- ----- -- <u>맡는다.</u></p>	<p>제5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1. <u>(현행과 같음)</u></p> <p>2. ~ 6. (현행과 같음)</p> <p><u>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후 자동해산한다.</u></p> <p>⑤ (개정안과 같음)</p>

## 2) 기타 조례 정비 관련

(안 제5조제3항제1호, 안 제6조, 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안 제9조제2항, 안 제10조)

- 안 제5조제3항제1호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추천 주체를 ‘의장’에서 ‘시의회’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의 조례규칙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법무담당관이 기관을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조례상 명확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

- 「지방자치법」 제37조<sup>5)</sup>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58조<sup>6)</sup>에서 의장을 의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기타 다른 조례<sup>7)</sup>의 경우도 대부분 위원 추천의 주체를 ‘의회’가 아닌 ‘의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일성 측면에서도 현행을 유지([표 5]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짐.
- 다음으로, 안 제6조와 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는 위원회를 비상 설화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고,
- 안 제9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시장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련 사항의 명칭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불임]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개요

### 2.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운영 실적

5) 「지방자치법」 제37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6) 「지방자치법」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7)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등

## [붙임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개요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관련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 기 능

- 한강수계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수질 개선 종합계획 심의·의결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결산 등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 구 성 : 총 9명

- 환경부차관(위원장), 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 부단체장,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 운 영

- 안건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참여기관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중요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먼저 협의
- 실무사항 처리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을 사무국으로 지정, 업무 수행

#### ○ 최근 3년간 개최 현황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12월	
		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계	24	3	5	3	6	3	4
서 면	22	3	3	3	6	3	4
대 면	2	-	2	-	-	-	-

#### \*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 구성(10명) : 한강유역환경청장(위원장), 5개 시·도 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이사, 한국수력원자력 그린에너지본부장, 원주지방환경청장
- 역 할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 안건 사전검토 및 위임 사항 의결
- 위임 사항 : 주민지원사업계획 승인,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계획 수립 등

## [붙임 2]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운영 실적

### □ 1기 운영실적

- 운영기간 : 2013.09.26. ~ 2015.09.25.(2년)
- 구성 : 총 11명
  - 당연직(2명) : 도시안전실장(위원장), 물관리정책관
  - 위촉직(9명) : 시의원(2명), 전문가(6명), 시민단체(1명)
- 운영실적(※ 서면회의 참여율은 위촉직 서면의견 제출수 기준)

회의차수	회의형식	개최일	안 건	참여율
1차	대면	'13.09.26.	1. 위원위촉 2. 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72.7% (8명/11명)
2차	서면	'13.10.31. ~ '13.11.04.	1. (자문)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 지침 개정(안) 2. (자문) 친환경관리계약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55.6% (5명/9명)
3차	서면	'14.02.10.	1. (보고) '13년도 한강수계기금 결산 및 '14년도 운용 계획 2. (보고) '13년도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추진현황 3. '14년도 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11.1% (1명/9명)
4차	서면	'14.03.20. ~ '14.03.28.	1. (자문) 춘천 · 의암호 수질개선 사업 기금 지원 2. (자문) 인천시 상 · 하류 협력증 진사업 지원 기준(안)	55.6% (5명/9명)
5차	대면	'14.05.22.	1. (자문) '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 (자문) '15~'16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45.4% (5명/11명)
6차	서면	'15.02.06. ~ '15.02.11.	1. (자문)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금운용계획(안)	33.3% (3명/9명)

회의차수	회의형식	개최일	안 건	참여율
			2. (자문) '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7차	서면	'15.05.15. ~ '15.05.19.	1. (자문) '1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4.4% (4명/9명)

## □ 2기 운영실적

- 운영기간 : 2015.10.21. ~ 2017.10.20.(2년)
- 구성 : 총 13명
  - 당연직(1명) : 물순환안전국장(위원장)
  - 위촉직(12명) : 시의원(2명), 전문가(9명), 시민단체(1명)
- 운영실적(※ 서면회의 참여율은 위촉직 서면의견 제출수 기준)

회의차수	회의형식	개최일	안 건	참여율
8차	대면	'15.12.03.	1.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제2기 구성 2. (보고) 물이용부담금 제도현황 3. (보고) '1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 (자문)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용방향(안)	69.2% (9명/13명)
9차	대면	'16.05.11.	1. (자문) '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 (자문) '17~'18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3. (자문) 용인 안전물류센터 토지 매수 4. (보고) '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	61.5% (8명/13명)
10차	서면	'16.12.29.	1. (보고)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 부담금 포럼 개최결과	-

11차	대면	'17.04.25.	1. (자문) '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 (보고) '18년도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3. (보고) '1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 4. (보고)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 부담금 2차 포럼 개최 결과 5. (보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용 개선방안 연구 용역 추진 현황	56.8% (7명/13명)
-----	----	------------	--------------------------------------------------------------------------------------------------------------------------------------------------------------------------------------------	-------------------

## □ 3기 운영실적

- 운영기간 : 2017.10.27. ~ 2019.10.26.(2년)
- 구성 : 총 15명
  - 당연직(1명) : 물순환안전국장(위원장)
  - 위촉직(14명) : 시의원(2명), 전문가(11명), 시민단체(1명)
- 운영실적(※ 서면회의 참여율은 위촉직 서면의견 제출수 기준)

회의차수	회의형식	개최일	안건	참여율
12차	서면	'17.12.28.	1. (보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용 개선방안 2. (보고) '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13차	대면	'18.05.04.	1. (자문) '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 (자문) '19~'20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3. (보고) '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	46.7% (7명/15명)
14차	서면	'18.11.29. ~ '18.12.03.	1. (자문) 용인 보평지구 도시계획 시설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검토(안) 2. (자문) 지방도391호선 야밀고개	57.1% (8명/14명)

			위험도로 선혈개선 공사의 편입 토지 매각(안) 3. (자문)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 개정(안) 4. (자문)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정(안)	
15차	대면	'18.12.11.	1. (자문) '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 (자문) '19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 벨트 시행계획(안) 3. (보고)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운영현황 4. (보고) 물이용부담금 제도현황 5. (보고) '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6. (보고) 한강 상수원 및 물이용부담금 관련 최근 동향	53.3% (8명/15명)
16차	서면	'19.05.02. ~ '19.05.08.	1. (자문) '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 (자문)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을 위한 기금운용 규칙 개정(안) 3. (자문) 한강수계 상·하류 협력 사업 기금 지원 4. (보고) '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 5. (보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 운용계획 수립계획	64.3% (9명/14명)

## □ 4기 운영실적

- 운영기간 : 2019.12.18. ~ 2021.12.17.(2년)
- 구성 : 총 13명

- 당연직(1명) : 물순환안전국장(위원장)
- 위촉직(12명) : 시의원(2명), 전문가(9명), 시민단체(1명)

○ 운영실적(※ 서면회의 참여율은 위촉직 서면의견 제출수 기준)

회의차수	회의형식	개최일	안 건	참여율
17차	서면	'20.05.29. ~ '20.06.04.	1.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위원 해촉	91.7% (11명/12명)

## □ 5기 운영실적

- 운영기간 : 2022.01.01. ~ 2023.12.31.(2년)
- 구성 : 총 13명
  - 당연직(1명) : 물순환안전국장(위원장)
  - 위촉직(12명) : 시의원(2명), 전문가(8명), 시민단체(2명)
- 운영실적 : 회의 개최실적 없음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 **7. 수정안의 요지 :**

- 안 제4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한강수계관리 기금과 관련된 사항이 매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함.
- 안 제5조제3항제1호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서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기타 다른 조례의 경우도 의원 추천의 주체를 ‘의회’가 아닌 ‘의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일성 측면에서 현행을 유지함.
- 안 제5조4항은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위한 조치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도록 하고 있으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안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한 경우는 위원회 해산 시기가 특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수정함.

####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71
----------	-----------

제 안 년 월 일 : 2023년 4월 19일  
제 안 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 1. 수정이유

- 안 제4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한강수계관리 기금과 관련된 사항이 매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함.
- 안 제5조제3항제1호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서 의장이 의회를 대표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기타 다른 조례의 경우도 의원 추천의 주체를 ‘의회’가 아닌 ‘의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일성 측면에서 현행을 유지함.
- 안 제5조4항은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위한 조치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토록 하고 있으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안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한 경우는 위원회 해산 시기가 특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수정함.

## 2. 수정 주요내용

- 가. 안 제4조의 위원회의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함. (안 제4조)
- 나. 안 제5조제3항제1호를 현행대로 유지함. (안 제5조제3항제1호)
- 다. 안 제5조4항 중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수정함. (안 제5조제4항)

##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2.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한강수계관리기금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5조제3항제1호 중 “시의회”를 “의장”으로 한다.

안 제5조제4항 중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능) ① <u>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u>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2.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한강수계관리기금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서울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 - ② (생 랙) ③ (생 랙) 1. 안전·환경·수자원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2. ~ 6. (생 랙)  <신 설>	제5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 -----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2. ~ 6.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제5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 과장이 된다.</u></p>	<p><u>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후 자동해산한다.</u></p> <p><u>⑤ -----</u></p> <p>-----</p> <p>-----</p> <p>-- <u>말한다.</u></p>	<p><u>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후 자동해산한다.</u></p> <p><u>⑤ (개정안과 같음)</u></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4항의 항번호를 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자동해산한다.

제5조제5항 중 “된다”를 “맡는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한강수계관리기금의”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를 “시장이 따로”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물순환안전국장 소속으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둔다.</u>	제3조(위원회의 설치) ----- ----- ----- <u>둘 수 있다.</u>
제5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 6. (생 략)	제5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자동해산한다. ⑤ ----- ----- <u>맡는다.</u>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u>&lt;삭 제&gt;</u>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 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8조(위원회의 운영) <u>&lt;삭 제&gt;</u>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공개) ① (생 략)  1. <u>한강수계관리기금</u> 의 결산보고서 2. <u>한강수계관리기금</u> 의 운용계획 3. (생 략)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를 요구한 사항	제9조(공개) ① (현행과 같음)  1. <u>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관리기금</u> ----- 2. <u>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관리기금</u> ----- 3.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② ----- <u>시장이 따로</u> -----.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	<u>&lt;삭 제&gt;</u>

현 행	개 정 안
<p><u>을 위촉 해지 할 수 있다.</u></p> <p><u>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p> <p><u>2. 위원이 품위손상 ·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u></p> <p><u>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지를 원하는 경우</u></p>	